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도입과 운영동향

본협회 조사부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도입 동향

최근 개발도상국과 동구권국가에서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기존의 경쟁법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경쟁법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 대만이 1991년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것을 위시해서 태국, 말레이시아가 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베트남도 경쟁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스리랑카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법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1993년에 처음으로 경쟁관련법규로서 「부당경쟁금지법」(본 공정경쟁지 6호에 제재)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몽골도 1993년에 법을 제정·운영해오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1979년부터 「가격통제 및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오다 새로운 경쟁법으로 개편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구 소련과 동구제국의 경우에는 1990년에 헝가리, 폴란드가 처음으로 경쟁법을 도입한 이래 1991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1992년에는 베르로시, 우크라이나, 우즈베크스탄, 리투아니아, 1993년에는 몽골, 아제르바이젠,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체코(개정), 1994년에는 키르기스탄, 슬로바키아(개정), 1995년에는 러시아(개정) 등이 새로 제정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비교적 활발하게 경쟁법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타 개발도상국으로는 1991년에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1993년에 자메이카, 멕시코, 1994년에는 터키, 잠비아, 브라질(개정) 등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을 함으로써 최근 경쟁법도입 국가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법도입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구소련연방제국을 대상으로 경쟁정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기관도 경쟁정책에 관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OECD는 법안의 기초에 관한 지원이나 집행실무에 관해서 세미나개최 등을 하고 있으며 UNCTAD(UN무역개발회의)도 기술협력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UNCTAD 사무보고서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개혁에 있어 경쟁정책의 역할」은 이러한 활동의 성과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Model Law의 작성이나 세미나 개최, 경제발전에 있어 경쟁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이론적 견지에서 분석을 행하고 있다.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서도 작년 11월의 일본대판행동지

침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항목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경쟁법 운영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초보단계에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은 성격면에서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내용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표본적인 경쟁법을 선정하여 선진국의 경쟁법과 함께 연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금회에는 태국과 불가리아의 경쟁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체계·내용은 물론 운영방법에서 여러가지 흥미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태국의 경쟁법

1. 태국에 있어 경쟁법 도입의 배경

최근 태국의 경쟁구조가 변화하여 제조업부분과 수출부분에 한층 의존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시장력(Market Power)의 형성을 목적으로 기업간 또는 산업내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독점이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부당이득금지법」(Anti-Profitting Act)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로서 부당한 가격상승에서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다. 동법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협조하여 설정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점행위 또는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지법의 개정대신에 사회·경제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9년에 「가격통제 및 독점금지법」(Price Fixing and Anti-Monopoly Act)이 제정되었다.

2. 경쟁법의 개요

「가격통제 및 독점금지법」은 다음의 2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1부 : 불공정한 가격설정을 규제하는 소비자보호규정

제2부 : 독점 혹은 제한적 상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방지규정

(1) 가격통제(Price Fixing)

독점금지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라 함)가 내각의 승인을 얻어 통제대상 상품에 지정한다. 지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 일용품일 것
- 생산자가 소수로써 제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초상품일 것
- 타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관련투입재일 것
- 독점적 성격을 가질 것

통제대상 상품으로 고시되는 경우 중앙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 ① 구입자가 중앙위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판매자가 중앙위가 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통제대상 상품의 판매 또는 구입가격을 고정 또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 ② 통제대상 상품의 판매에 의해서 판매자가 얻는 최대이익율 또는 각거래단계별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마

진율을 고정하는 것

- ③ 통제대상 상품의 가격표시를 요구하는 것
- ④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통제대상 상품의 생산, 유통, 출하, 구매, 판매 또는 보관에 관한 규칙이나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
- ⑤ 중앙위의 고시의 적용지역이나 시기를 규정하는 것
- ⑥ 통제대상 상품의 양, 보관, 생산비용, 생산공정 및 유통방법을 당국직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
- ⑦ 통제대상 상품의 재고 또는 재고를 추가하는 것
- ⑧ 통제대상 상품의 역외(域外) 반출 또는 당해 제품의 일정지역에의 반입을 금지 또는 허가하는 것
- ⑨ 사업자에게 통제대상 상품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을 명하는 것
- ⑩ 통제대상 상품의 구입 또는 판매의 할당을 하는 경우 또는 통제대상 상품의 구입 또는 판매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
- ⑪ 통제대상 상품을 지정된 양 또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부당국 또는 중앙위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게 판매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 ⑫ 지정된 양을 초과하여 유통업자에게 양도, 사용, 이동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⑬ 중앙위 사무국장 또는 기타의 당국직원이 생산, 수송 구입, 유통 및 보관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 ⑭ 지정된 양을 초과하여 매점 또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2) 독점금지(Anti-Monopoly)

가격통제와 마찬가지로 독점 또는 제한적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먼저 중앙위가 당해사업자를 통제대상사업자로 지정고시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 ① 신고된 가격이 생산비용, 판매비용 및 적절한 이윤율을 고려할 때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으로 정하는 것
- ② 중앙위가 정한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③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독점 및 부당한 제한적 거래관행을 금지시키는 것
 - ⓐ 일정의 통제대상 상품에 대한 총대리점을 지정 또는 승인하는 것
 - ⓑ 통제대상 상품을 동일가격으로 또는 합의된 가격으로 판매토록 결정하는 것
 - ⓒ 지역의 분할 및 할당에 의해서 각지역에 있어 유통사업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당해사업의 타사업자와 경쟁없이 통제 대상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고객을 지정하는 것
 - ⓓ 통제대상 사업자가 지역을 분할하여 통제대상 상품을 구입하는 지역의 할당을 하는 것 또는 통제대상 상품을 구입하는 구입선을 지정하는 것
 - ⓔ 통제대상 상품의 구입가격을 동일수준으로 고정하는 것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동상품의 수량을 한정하는 것
 - ⓕ 공급량을 시장수요 이하로 제한할 목적으로 생산·구입·분배하는 양을 고정시키는 것
 - ⓖ 통제대상 상품의 구입이나 유통에 관하여 동일 또는 합의에 따라 조건 또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
 - ⓗ 품질을 기생산 또는 유통한 것보다 저하시키고 이전 가격과 동일 또는 상회하는 가격으로 유통하는 경우
 - ⓘ 통제대상 사업의 합병 또는 관리·지휘 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 ⓙ 시장 조작 또는 지배를 목적으로 협정을 맺는 경우

태국경쟁법을 만드는 데는 외국의 법률을 참고하였다. 현행법상 사업자의 독점적행위를 감시 또는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쟁법의 제2부인 독점금지조항에는 시장력(Market Power)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정도 없으며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규정도 없다.

3. 경쟁당국의 활동

국내거래국이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조치(Administrative Measures)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거래국은 사업자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토의를 한 후 당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당국의 조치에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당국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국내거래국은 중앙위에 통제대상사업자지정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 ① 원가 및 유통과정의 분석
- ② 가격협정 및 가격조정에 대한 조사
- ③ 국내에서의 상품공급 부족의 방지와 해소
- ④ 독점의 방지 및 해소, 그리고 피의사업자 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
- ⑤ 공정거래형성을 위한 체계화 조치

과거 3년간 태국에서 위반사건 또는 합병의 예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독점금지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무성 국내거래국은 「가격통제 및 독점금지법」을 대신하는 2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가격통제법안」(The Draft of Price Fixing on Goods and Services Act) 및 「사업경쟁법 안」(The Draft of Business Competition Act)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의 개정법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장력의 남용, 독점화를 위한 합병, 경쟁의 감소 또는 사업자의 배제에 관한 조항에서 금지되는 행위 또는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구조규제(構造規制)에서 행위규제로 이행하게 된다.
- ②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독점행위 또는 위법한 경쟁제한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 ③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의 권리를 인정하고
- ④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재판소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인정하고
- ⑤ 고액의 벌금형 및 단기의 금고형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게 된다.

불가리아의 경쟁보호법

1. 경쟁법 도입의 배경

경쟁보호법(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은 1991년 5월 2일 불가리아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동법은 1991년과 1992년에 한차례씩 개정이 되었으나 EU와의 연합협정에 따른 EU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경쟁보호법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 동법 제정 이전에는 기업의 대부분이 국영으로 정부가 기업을 경영·조성·관리하여 왔다. 기업의 자립은 제한되고 경쟁이 전혀 없었다. 경쟁의 촉진이나 제한적 상관행의 규제를 위한 정책도 전무했다.

1989년 말까지 동구제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와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경제상호원조회(COMECON)의 해

체는 불가리아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였다. 국가 개입이 크게 줄고 제조, 통상 및 서비스에 있어 자유 기업활동과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개인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 평등성의 선언, 상법에 의한 기업활동에의 이행, 외국무역과 가격의 자유화 등 각종 조치가 강구되었다.

경쟁보호법의 제정은 경제효율의 촉진 및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자는데 있다. 또한 동법은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방법의 보전에 의해서 경쟁과정의 성공을 보호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2. 경쟁보호법의 개요

경쟁보호법 제1조에서는 동법의 목적을 「제조, 통상 및 서비스에 있어 자유스런 기업활동, 가격의 자유스런 결정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보증」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법은 「독점적 지위의 남용, 부정 경쟁 및 경쟁을 제한하는 기타의 행위로부터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항). 동법 제2조에 의거 경쟁보호위원회(競爭保護委員會, The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라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설립되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경쟁보호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과 포함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1991년에 동법이 의회에 통과되었을 때 위원임기는 5년으로 되어있었으나 1992년의 개정에 의해서 임기에 관한 조항은 폐지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을 가져야만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첨가되었다.

경쟁보호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제18조 이하)은 동법에 위반하는 행정행위의 철회요구를 정부기관에 요구하고 법원을 통한 위법한 영업 및 독점적지위의 남용, 부정경쟁 및 경쟁제한행위에 제재를 과하는 것이다. 경쟁보호위원회는 기업이 아닌 경쟁보호법에 위반 또는 위반을 묵인한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있다. 벌금을 과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에는 경쟁보호위원회가 입증책임을 진다.

경쟁보호위원회는 또한 독점적지위의 남용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는 불가리아 각료회의(Bulgarian Council of Ministers)에 대하여 독점적지위에 있는 자가 준수해야 할 최고 또는 최저 가격의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다(제16조).

경쟁보호법에 포함되는 조항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1) 반경쟁적 계약, 독점적 지위 및 경제력 집중에 적용되는 규정(제3~10조)
- (2) 부정경쟁, 넓은 의미의 경쟁(제12~14조)과 고용자 또는 동종업원 사이의 경쟁에 적용되는 것

경쟁보호법 제2장 독점적 지위에서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과 경제력집중을 규제하고 있다. 독점적지위란 국내시장에서의 특정의 경제활동에 있어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단독 내지 지배관계에 있는 자와의 합계한 시장점유율이 35%를 초과한 자에 의하여 점유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독점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생산량이나 시장참입의 제한, 독점가격, 강제적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구조의 신규형성방지의 관점에서 동 제4조는 모든 행정당국(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지위를 형성하는 것 또는 사실상 형성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조항은 상기 결정이 경쟁의 자유 또는 가격설정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동법 제5조는 상기 제4조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와 동시에 상업단체의 설립 또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독점적지위의 형성 및 경쟁회사의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제외를 경쟁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경쟁보호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제6조 제2항).

경쟁보호법 제3장 「경쟁제한의 금지」에서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세 가지 유형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카르텔 및 독점적지위 형성의 원인이 되는 기업, 경제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결정은 무효가 된다. 제8조 제2항은 독점적지위의 형성까지 이르지 않는 협정에도 적용된다. 독점에 의하여 시장, 공급업자, 구매인, 매도인 또는 소비자에 관하여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제한 행위가 계약의 성질에 따른 것이고 또한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조에서는 「판매, 제조, 서비스, 수송, 지불 등에 관하여 표준화된 조건」을 내용으로 한 협정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협정이 적법이 되려면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는 경쟁자간에 체결되고 경쟁제한이나 독점적지위의 형성과 연결되는 대리점 계약 또는 배타적 유통계약(위탁계약)은 금지하고 있다.

경쟁보호법은 경쟁제한(제2장 및 제3장)뿐 아니라 부정경쟁(제12조)에 대해서도 금지함으로써 경쟁을 보호하고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상관행에 반하여 직접 또는 경쟁자와 그의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동목록은 부정경쟁의 사례를 모두 망라한 것은 아니다(제12조 제2항).

타인의 생산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사용 또는 누설하는 것도 부정경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공지케하거나 누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활동에 관한 결정이나 자료를 의미한다. 제13조에서는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경쟁보호법은 종업원에 의한 부정경쟁으로부터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에 의한 경쟁기업의 경영 또는 감독 부분에의 동시참가(제15조 제1항), 고용인의 승인없이 경쟁이 되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노동계약에의 서명을 금지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경쟁보호법은 실체적 규정과 함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원칙으로는 법에서 금지 또는 규제하는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반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행정처분도 받도록 되어있다. 민사상 책임이란 위법된 거래행위의 무효선언 또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동법은 또한 벌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경쟁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선진시장 경제국(독일, 프랑스)의 경쟁법과 현행국제조약(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중 부정경쟁에 관한 조항)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나 조약과는 상이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독일 및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의 현행법제와 상이하다. 불가리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제한에 대한 법적 보호(독점금지)와 불공정한 거래방법 및 종업원의 부정경쟁에 대한 법적보호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
- (2) 독점과 지배적 지위를 구별하지 않고 시장점유율만으로 독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음
- (3) 수평적 협정과 수직적 협정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
- (4) 경쟁보호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은 프랑스, 독일 및 동구제국의 경쟁당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음. 경쟁보호위원회는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벌금을 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사결과 법률위반으로 판명되

었을 때는 사건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5) 위반자에게 과하는 벌금액의 결정방법이 상이함

(6)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에 의한 정보, 조사, 심사의 요청 및 경찰당국에 대한 협력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음

(7) 일부 동구제국의 현행법과 달리 민영화나 비독점화에 관한 경쟁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현재 경쟁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준비중인 경쟁보호법의 개정안이 채택되는 경우 상기 일부 특징이 없어져 선진국의 경쟁법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3. 경쟁보호위원회의 활동

경쟁보호위원회는 경쟁자유화 정책을 충실히 지지하고 그의 활동을 통하여 시장메커니즘의 도입과 이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의 확보에 공헌하며 경쟁촉진과 경쟁질서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 및 WTO에의 가맹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보호위원회는 불가리아의 법제를 EU와 WTO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경쟁정책분야에 있어서도 타국의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추진, 경제의 국제화진전에 보조를 같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거 3년간 경쟁보호위원회는 492건을 심사하였다. 대부분의 사건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심사하였으며 직권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다. 자연인과 법인 합해서 123건의 사건이 위반으로 입증되어 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1994년 경쟁보호위원회는 처음으로 회사전체 또는 그 일부의 민영화건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였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시장상황을 조사하여 매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4건의 경우 민영화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유스런 가격설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인가를 하였다. 심사결과 부정경쟁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부정경쟁의 패턴은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포장한 물품의 판매와 경쟁상대방의 신용이나 평판을 손상케하자는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위원회에서 합병을 취급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의 과제는 대기업의 분할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에 의하여 제정된 현행법중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의해서 판명되었다. 시장에의 침입장벽을 제거한다는 견지에서 경쟁보호위원회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을 개정도록 제안을 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경쟁보호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어떤 국영기업이 산림설계 프로젝트를 책정하는데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된 근거가 각료회의의 승인에 의한 명령에 있음을 알게되어 위원회는 이 명령이 사업자간에 자유스런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서 신규참입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 각료회의에 대하여 당해 명령을 취소토록 요구를 하였다. 또하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행정당국이 국영의 사진촬영소만이 신분증명용 사진촬영이 가능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알게되고 위원회는 이 명령이 경쟁을 제한한다 하여 당해 명령을 취소토록 제안하였다.

▶ 이 글은 1995년 11월 일본 공취위와 JICA가 실시한 발전도상국의 경쟁당국지원에 대한 연수에서 불가리아 대표가 발표한 각국의 경쟁법을 일본 공정취인협회 발간 공정취인지에 게재한 것을 중요 부분만을 발췌한 것임.